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0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외 가업상속공제 등 한도 확대(박상웅의원안, 윤영석의원안)	3

I. 개요

1.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22.
- (3) 회 부 일 : 2025. 8.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증여)공제 제도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써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관련 공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

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3항제3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외 가업상속공제 등 한도 확대

(박상웅의원안, 윤영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 </tbody> </table> ○ 사후관리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 <신 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확대 ○ 공제한도 상향 - 일반 가업상속: (현행과 같음) - <u>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박상웅의원안)</u>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 rowspan="3">6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r> <tr> <td>30년 이상</td></tr> </tbody> </table> -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가업을 <u>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상속(윤영석의원안)</u>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6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8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1,200억원</td></tr> </tbody> </table> ○ 사후관리 - (현행과 같음)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구감소지역 외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추가 공제분 추정(박상웅의원안) -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도권으로 이전 시(윤영석의원안)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8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8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윤영석 의원안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과세특례 한도 확대 - (현행과 같음)																
○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한도 내에서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 내용 - (현행과 같음)																
○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 </tbody> </table>	가업영위기간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한도 - 일반 가업승계 한도: (현행과 같음) -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u>가업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도</u>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u>600억원</u></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u>800억원</u></td></tr> <tr> <td>30년 이상</td><td><u>1,200억원</u></td></tr> </tbody> </table>	가업영위기간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u>600억원</u>	20년 이상 ~ 30년 미만	<u>800억원</u>	30년 이상	<u>1,200억원</u>
가업영위기간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u>600억원</u>																
20년 이상 ~ 30년 미만	<u>800억원</u>																
30년 이상	<u>1,200억원</u>																

* 박상웅의원안 2025. 4. 14. 발의(의안번호 9789), 윤영석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96)
윤영석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305)

☐ 3건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혹은 수도권외 가업상속(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박상웅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윤영석의원안은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가업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현행의 2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법¹⁾은 중소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공제한도(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²⁾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³⁾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2)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받은 경우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증여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 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 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내용·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내용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적용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혹은 수도권외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을 활성화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⁴⁾에 따라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⁵⁾·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⁶⁾,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⁷⁾

이에 따라 2024년 2월 27일 기준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마다 다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4) 2020년 1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지원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으나, 2023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5) 특별시 제외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개수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개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3개
인천	강화군, 옹진군	2개
경기	가평군, 연천군	2개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개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개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개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개
합 계		89개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제2024-15호)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인구, 산업 등 수도권 과밀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비 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그 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604만 7,523명(50.86%), 비수도권 인구는 2,516만 9,698명(49.14%)으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2014년~2023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도권	2,559만 (49.50)	2,568만 (49.60)	2,580만 (49.78)	2,593만 (50.00)	2,604만 (50.24)	2,602만 (50.39)	2,599만 (50.52)	2,601만 (50.69)	2,605만 (50.86)
비수도권	2,611만 (50.50)	2,610만 (50.40)	2,603만 (50.22)	2,592만 (50.00)	2,579만 (49.76)	2,562만 (49.61)	2,545만 (49.48)	2,531만 (49.31)	2,517만 (49.14)
격 차 (수도권 비수도권)	△51.5만	△41.9만	△231만	0.2만	24.8만	40.8만	53.1만	70.3만	87.8만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외 14곳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5.1. 3.

둘째, 개정안의 세제혜택은 매출액 및 기업자산 규모가 큰 기업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유인할 수 있고, 큰 규모 기업의 이전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현재 가업의 자산 규모가 크면 공제한도액에 따른(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려는 것임.

셋째, 개정안의 세제혜택은 최대주주인 대표⁸⁾에게 귀속되는데, 기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법인세 감면 등 기존 세제지원⁹⁾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도 있음.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생략)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9)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지분만큼 혜택이 귀속되지만, 상속공제의 혜택은 대표에게 전액 귀속되므로, 기업 이전에 관한 경제적 유인으로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이전 창업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양하고,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든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이익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형량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확대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나 창업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둘째,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인 대표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하나, 이처럼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내린 의사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가령, 적지 않은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고 경영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기업가치의 향상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세제상 이익을 위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이전비용, 경영의 비효율성 등은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최대주주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가 함께 부담하게 됨.

셋째, 개정안에 따른 세제혜택은 현행 공제한도액이 부족할 정도로 기업의 자산규모가 큰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조세의 수직적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건당 평균 공제 금액은, 33억원 수준이고, 공제한도 적용 건수는 767건 중 5건에 불과함.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건수	767	106	110	147	188	216
건당 평균 공제액	33	35	31	26	43	30
전체 공제금액	25,414	3,685	3,454	3,761	8,112	6,402
공제한도 적용 건수	5	-	-	-	3	2

넷째, 기업의 소재지 이전을 이유로 가업상속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오랜기간 축적된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000